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홈페이지게재용)

귀하의 대출이 장기적으로 연체가 되어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아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에 대한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 대상

계재일자	고객명	생년월일	대상주택
2026-04-28	우*석	901218	경기 의정부시 금신로 276, ***동 ****호
기한이익상실일	기한이익상실사유	1차통지일	2차통지일
2025-03-04	연계대출 표준약관 제10조 등	2026-04-15	2026-04-20

□ 주택 경매 신청 예정일

2026-05-15 이후

□ 담당자 정보

담당자	연락처	상담가능 시간
금융팀 임형빈	02-6954-7771 010-2864-8026	08:30 ~ 17:30 (주말, 법정공휴일제외)

2026년 04월 28일

주식회사 링크스톤파트너스

대표이사 권오형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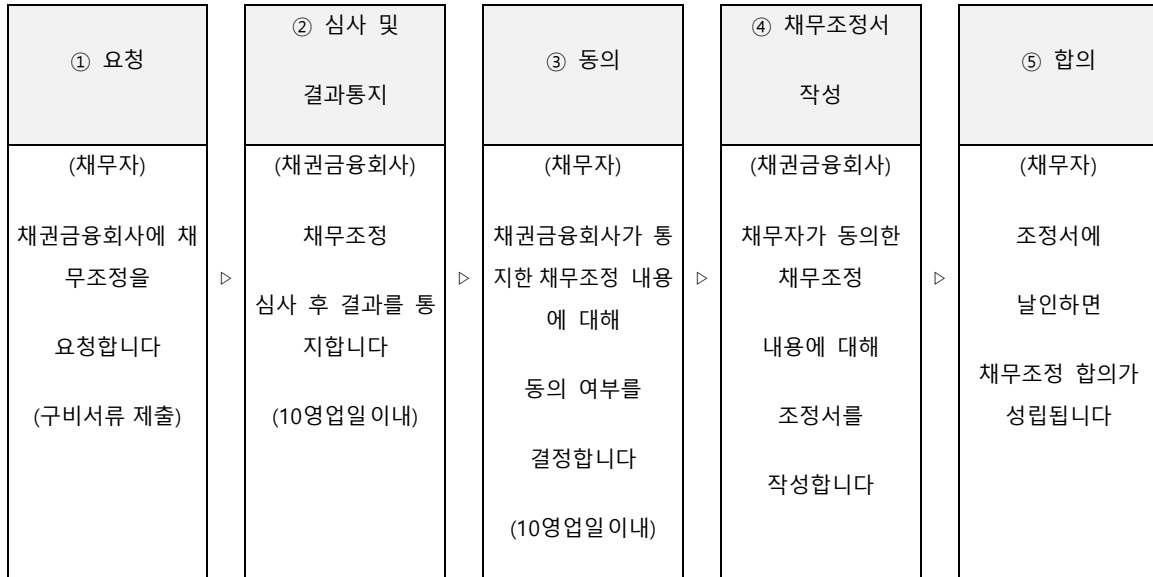


□ 채무조정 지원 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02-6954-77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채무조정 절차>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